

광명시 야외 체력단련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정 2015. 3. 6 예규 제87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광명시가 야외에 설치한 체력단련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 체력단련시설”이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고정식 운동기구(간이운동기구 포함)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 체력단련시설(이하 “체력단련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체력단련시설을 설치·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에 따라 설치된 체력단련시설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관리주체) 체력단련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로 한다.

제5조(시설관리) 시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체력단련시설을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 장소) 체력단련시설의 설치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도시공원, 경로당, 둔치 등의 공공장소
2. 관리부서장이 평소 체력단련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의견수렴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 및 철거) ① 체력단련시설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기구를 사용하고,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체력단련시설의 설치면적은 1대 당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장은 현장 점검 결과 노후화 등으로 사용이 불편하고 시민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체력단련시설은 철거할 수 있다.

제8조(관리대장) 관리부서는 체력단련시설을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 체력단련시설 관리대장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안내 표지) 관리부서는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의 안내 표지를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는 매년 체력단련시설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체력단련시설의 점검계획에 따라 보수·관리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체력단련시설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한 관리부서장은 해당 체력단련시설에 대해서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관리부서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체력단련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체력단련시설은 이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표]

안내 표지(제9조 관련)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위 치	
기 구 명	
관리부서	
연 락 처	

[별지 서식]

야외 체력단련시설 관리대장

(전면)

관리번호							
시설명							
시설위치							
소유자				관리주체			
시설규모	○ 부지면적 : m ² ○ 시설내역 : ○ 세부관리번호 :						
시설이력	조성일	사업비 (천원)	일자		일자		일자
			사업내용		사업내용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위치도				전체현황사진			

(후면)

【시설별 관리내역】

관리번호	○○공원 - 1			관리번호	○○공원 - 2		
시 설 명				시 설 명			
현 황	구입가격	원		현 황	구입가격	원	
	보수이력				보수이력		
관리번호	○○공원 - 3			관리번호	○○공원 - 4		
시 설 명				시 설 명			
현 황	구입가격	원		현 황	구입가격	원	
	보수이력				보수이력		